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등 개정(안) 대비표

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

조 항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 7 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제③항	<p>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, 압류 등의 해소,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.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·체납 처분이 있는 때 3.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,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,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. 제 5 조, 제 18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. <u>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, 위·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</u> 6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	<p>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, 압류 등의 해소,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.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·체납 처분이 있는 때 3.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,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,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. 제5조,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 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	<p>-호 삭제</p> <p>-호번호 채상</p>